

#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일부 대행



## ■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, 이 경우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자는 3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해야 함

※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, 시행규칙 별표 1

- ▶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중에서 **소방·피난·방화시설 관리에 한하여 업무대행**이 가능하고, **나머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**

※ 대행가능 대상 : 1급(연면적 1만5천㎡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), 2급, 3급

## 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이 강화되어 '24.12.1.부터 시행함

- ▶ 업무대행 인력은 대상물 등급,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**적합한 기술등급자(고·중·초급)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함**
- ▶ 대행인력 1명의 1일 **대행 업무량**은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 **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**하여 내실 있는 대행업무가 가능함
  - ※ 대상물 연면적, 공동주택 세대규모에 따라서 대행인력 등급별 차등 배점
- ▶ 업무대행은 **월 1회 이상 업무대행 점검표를 활용 기록유지**하고 점검표에 **관계인·기술인력이 각각 서명**하여 책임성을 강화함
- ▶ 관계인과 관리업자(소방시설관리업체)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**계약서의 계약**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
  - ※ 표준계약서 게시: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→ 공지사항

## ■ 관계인, 소방안전관리자, 대행업체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- ▶ **관계인** :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, 소방안전관리자 관리감독, 점검표 서명
- ▶ **소방안전관리자** :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, 대행업체 관리감독
- ▶ **대행업체** : 인력배치, 1일 업무량, 점검결과 설명 등 대행기준 준수



### [ 시행 전후 비교표 ]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배치인력 자격	○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인력 자격기준 부재	○ 대상 등급,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기술등급 자격자 배치
1일 업무량	○ 업무대행 1일 업무량 기준 부재	○ 1일 배점합산 8점 초과금지
업무대행 점검항목	○ 업무대행 점검항목 부재	○ 대행 점검표를 활용 점검
업무대행 횟수	○ 업무대행 점검횟수 부재	○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 기록 유지
표준 계약서	○ 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부재	○ 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마련(권고)

